

사업 연도	. . . ~ . . .	<b>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</b>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**1. 일반법인의 감면세액**

① 구분	② 감면내용	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근거 조항	코드	④ 감면세액 (소득금액)	비고
⑤ 비과세	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	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·제40조	604	( )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⑩란 해당 금액
	㉒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	제13조의4	62Q	( )	
	㉓		606		
⑥ 소득 공제	㉔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	제55조의2제4항	460	( )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의 ⑧란 해당 금액
	㉕ 주택임대소득공제(연면적 149㎡ 이하)	제55조의2제5항	463	( )	
	㉖			( )	
			458		
⑦ 비과세·소득공제분 감면세액			6A1		(과세표준+소득금액)×세율-산출세액
⑧ 세액 감면	㉗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	제21조	123	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④란 해당 금액
	㉘ 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	제22조	103		
	㉙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구 제33조의2	192		
	㉚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	구 제33조의2	13A		
	㉛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	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·제40조	13B		
	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	제62조제4항	13F		
	㉝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	제85조의2('19. 12. 31.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1A		
	㉞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	제85조의6	11L		
	㉟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	제85조의6	11M		
	㊱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	제96조	13I		
	㊲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	제96조의2	13N		
	㊳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임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8	181		
	㊴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임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9	182		
	㊵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제1호	197		
	㊶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제2호	198		
	㊷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제3호	1D2		
	㊸ 지역개발사업구역,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제4호	1D3		
	㊹ 해양박람회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제5호	1D4		
	㊺ 해양박람회특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제6호	1D5		
	㊻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제7호	1D7		
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제8호	1D6			
㊽ 평화경제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제9호	1D8			
㊾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제10호	1D9			

⑬ <sup>31</sup>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0제1항	11C	
⑬ <sup>32</sup>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1제1항	11G	
⑬ <sup>33</sup>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2	17A	
⑬ <sup>34</sup>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2	17B	
⑬ <sup>35</sup>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2	13H	
⑬ <sup>36</sup>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2	13V	
⑬ <sup>37</sup>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8	13P	
⑬ <sup>38</sup>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9	13Q	
⑬ <sup>39</sup>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제1호	13R	
⑬ <sup>40</sup>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제3호	1E1	
⑬ <sup>41</sup> 해양박람회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제5호	1E2	
⑬ <sup>42</sup>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제8호	1E3	
⑬ <sup>43</sup> 평화경제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제9호	1E4	
⑬ <sup>44</sup>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1제1항	13U	
⑬ <sup>45</sup>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0제1항	13T	
⑬ <sup>46</sup>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33	1D1	
⑬ <sup>47</sup>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33	1C1	
⑬ <sup>48</sup>		164	

① 구분	② 감면내용	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근거 조항	코드	④ 감면세액 (소득금액)	비고
⑨ 세액 공제	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	구 제5조	131	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 의 ④ 감면(공제)세액란 및 ⑦ 공제세액란의 해당 금액
	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제7조의4	14Z		
	㉖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	제8조의3제1항	14M		
	㉗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	제8조의3제2항	18D		
	㉘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	제8조의3제3항	18L		
	㉙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	제8조의3제4항	18R		
	㉚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	제8조의3제5항	15B		
	㉛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의3	14T		
	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의4	14U		
	㉝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13조의2	18E		
	㉞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13조의2제2항	15C		
	㉟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제19조	18H		
	㊱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2호	177		
	㊲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3호	14A		
	㊳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4호	142		
	㊴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5호	136		
	㊵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6호	135		
	㊶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의4	14B		
	㊷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의5	18B		
	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(기본공제)	제25조의6	18C		
	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(추가공제)	제25조의6	1B8		
	㊺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제25조의8	15A		
	㊻ 초연결 네트워킹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구 제25조의7	18I		
	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	제26조	14N		
	㊽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	제29조의2	14S		
	㊾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3제1항	14X		
	㊿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제29조의3제2항	18J		
	㉑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4	14Y		
	㉒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5	18A		
	㉓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7	18F		
	㉔ 통합고용세액공제	제29조의8	18S		
	㉕ 통합고용세액공제(정규직 전환)	제29조의8	1B4		
	㉖ 통합고용세액공제(육아휴직복귀)	제29조의8	1B5		
	㉗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	제104조의14	14E		
	㉘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1항	14I		
	㉙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2항	14K		
	㉚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4항	14R		
	㉛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	제104조의22	140		
	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25	14P		
	㉝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	제126조의7제8항	14V		
	㉞ 금사업자와 스크랩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제122조의4	14W		
	㉟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	제 104조의 30	18M		
	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제 104 조 의 32	10C		
	㊲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	제 104 조 의 35	1F1		
	㊳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	제 13 조 의 3 제 1 항	18N		
㊴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	제 13 조 의 3 제 3 항	18P			
㊵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96조의3	10B			
㊶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제99조의12	18Q			
㊷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제24조	13W			
㊸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제24조	1B1			
㊹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	제24조	13X			
㊺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	제24조	1B2			
㊻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3Y			
㊼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B3			
㊽ 통합투자세액공제(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3Z			
㊾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B9			
㊿ 해외자원개발투자자 대한 과세특례	제104조의15	1B6			
㉑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25조의7	1B7			
㉒		165			
	⑩ 감면세액 합계		1A2		

## 2.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

① 법인세 과세표준	②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 세율	③ 산출세액 (①×②)	④ 과세표준		⑤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 세율	⑥ 산출세액	⑦ 감면세액 (⑥-③)
			구분	금액			
			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				
합 계			합 계				

## 3.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

⑧ 공제내용	코드	⑨ 공제세액	비고
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18A	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
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18F	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
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	140	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
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10B	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④란 감면(공제)세액 해당 금액
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18Q	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
통합고용세액공제	18S		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
합 계			

### 작성 방법

#### 1.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

가. ⑦ 비과세·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④ 감면세액(소득금액)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[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의 ㉓란의 금액을 말합니다]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의 ㉔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.

나. 그 밖에 ⑤ 비과세, ⑥ 소득공제, ⑧ 세액감면,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

#### 2.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: ⑤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
##### 가.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천만원 + (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)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
3천억원 초과	65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

##### 나.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9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천8백만원 + (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9)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7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)
3천억원 초과	62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

##### 다.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천만원 + (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)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
3천억원 초과	65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

3.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.

※ 근거 법조항 중 “구”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.